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654호
- 발 의 자 : 정지권 의원(찬성자 9명)
- 발의일자 : 2019년 5월 22일
- 회부일자 : 2019년 5월 24일

2. 제안이유

-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립체육시설의 청소년 이용과 관련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12세이하 이용객의 지속적인 감소로 향후 감면 혜택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서울시립체육시설 이용자 현황을 보면 청소년 이용률이 2.6%로 극히 저조한 실정임, 청소년들의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으며 OECD 평균보다 높은 실정임. 이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시 12세까지 적용되는 감면 혜택을 청소년까지 확대하여 적용하여 청소년들의 이용을 활성화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 50% 감액, 전용사용료 30% 감액 대상을 현행 “12세 이하인 자”에서 “18세 이하인 자”로 개정(안 제9조제3항제 1호, 안 제10조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5호라목)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참조

5.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어린이(12세 이하)까지 적용되는 감면 혜택을 청소년(13세 이상 18세 이하)까지 확대·적용하여 청소년들의 체육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입장료) ①·② (생 략)	제9조(입장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	③ ----- -----.
1. <u>12세 이하인 자</u> ,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본인을 포함하여 4명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	1. <u>18세 이하인 자</u> , ----- ----- ----- ----- ----- ----- -----

<p>2. ~ 3. (생략)</p> <p>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p> <p>가. <u>12세 이하인자</u>, 65세 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00분의 50 감액</p> <p>나. ~ 마. (생략)</p> <p>2. ~ 4. (생략)</p> <p>5.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 감액</p> <p>가.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행사</p> <p>나. 민속제나 고유 민속문화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p> <p>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행사</p> <p>라. 65세 이상의 노인, <u>12세 이하의 어린이</u>,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p> <p>마.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행사</p>	<p>2. ~ 3. (현행과 같음)</p> <p>제10조(사용료의 감면) ----- ----- -----.</p> <p>1. -----</p> <p>가. <u>18세 이하인 자</u>, ----- ----- ----- ----- -----</p> <p>나. ~ 마. (현행과 같음)</p> <p>2. ~ 4. (현행과 같음)</p> <p>5. -----</p> <p>가. -----</p> <p>나. ----- -----</p> <p>다. ----- ----- -----</p> <p>라. 65세 이상의 노인, <u>18세 이하의 어린이 및 청소년</u>, ----- ----- -----</p> <p>마. ----- ----- -----</p>
---	---

- 청소년들의 비만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OECD 평균보다 높은 실정인 바, 시립체육시설 이용 시 12세까지 적용되는 감면 혜택을 18세까지 확대·적용함으로써 청소년의 체육시설 이용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 발표, '18.7월)에 따르면, 남자 아동·청소년 비만율(26%)은 OECD 평균(25.6%) 수준보다

높으며, 고도비만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09년 1.1% → '13년 1.5% → '17년 2.0%)임.

조례개정 시 세입감소 금액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의 시립 체육시설 이용자수에 대한 통계가 없어 서울시민의 시립체육시설 이용률 및 이용료를 활용하여 금액을 추계하여도

입장료 및 개인연습사용료를 50% 감액할 경우 연간 173만 7천원, 전용사용료 30% 감면시 연간 12만6천원으로 연간 총 186만 원으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의 사용료, 입장권 등을 30~50% 감면하고 있음.

〈타 시도 사용료 감면 현황〉

연번	시 도 명	조 례 명	관련 조항
1	대 구 광 역 시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2. 사용료 등의 50퍼센트 범위 내 감경 나. 노인, <u>어린이</u> , <u>청소년</u> ,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2	대 전 광 역 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5조(입장권) 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성인 200원 2. <u>어린이·청소년·군인</u> 100원
3	울 산 광 역 시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3조(사용료 등의 감면) 마. <u>어린이</u> : 100분의 50 바. <u>학생</u> 및 노인 : 100분의 30
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체육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사용료 감면) ②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3. <u>청소년</u> , <u>어린이</u> 및 군경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